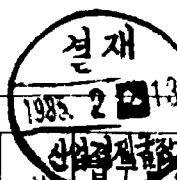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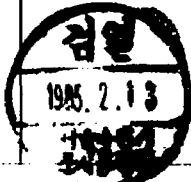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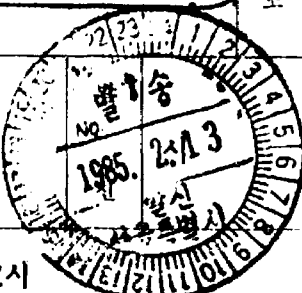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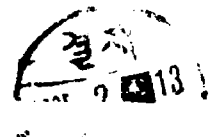


# 기안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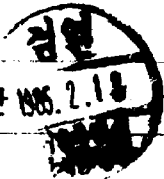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축 27450~251 (전화번호 731-6322)	전결 규정	4	조1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5. 2			
보존연한				
보조기관	산업경제국장	전결		
	농축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축산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기안책임자	박용하			
경유	각안참조			
수신				
참조				
제목	돼지고기 연동가격 결정 고시			
<b>(제 1 안) 내부 결재</b>				
1.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수산부 훈령 제 561호, 83.9.19)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의 돼지고기 고시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코자 합니다.				
가. 현행 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2,000원율				
조정 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1,800원으로				
나. 시행일				
1985. 2. 14				
다. 조정 사유				
1) 축산물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정육 경락가격				
1985.2.1 - 2. 5. 10.9% 하락				
2) 소매가격 조정으로가격 안정				
첨부	돼지고기 연동가격 조정 1부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안) 1부			

16

( 제 2 안 ) 시 행 안	
수신	수신처 참조 1985.2.13
제목	같은건
1.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수산부 훈령 제561호, 83.9.19)에 의거 당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별첨과 같이 조정 고시하였기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람)	
첨부 :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문 1부	
수신처 농수산부장관, 나(-1)	
서울지방국세청장, 축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장, 서울시축협조합장, 농협서울시지부, 축협(중) 서울공판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축산물검사부장),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축산기업조합장, 우성농역(주), 협진식품(주), 서울경기 양돈업협동조합장,	
( 제 3 안 ) 시 행 안	
수신	서울특별시 축산기업조합장
제목	같은건
1. 당시 관내에 적용할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수산부훈령 제561호, 83.9.19)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조합원에게 주지시키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원 준수사항	
가. 조정 고시된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저침하도록 할것	
나.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지육경락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고시한 가격 이상으로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	
3. 조정 고시사항	



연동가격 (정육 500그램당)	1,800 원
시행일	85. 2. 14 부터
4. 고시가격을 위반하거나 상등육, 지방제거 명목으로 고시가격을 위반할시는 철저히 단속하여 조치할 것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첨부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문 1부
(제4 안) 시행안	1985. 2. 14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위생과장, 산업과장
제목	같은건
1. 당시 관내에 적용할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수산부 훈령 제 561호 83.9.19)에 위거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귀기관내 정육점에 가격표를 게시토록하고	
2. 표준 거래단위 정육 500그램 기준 판매를 준수토록하고, 상등육, 지방제거 명목으로 고시가격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조치하기 바람.	
3. 돼지고기 연동가격 조정 고시사항	
고시가격	정육 500그램당 1,800 원
시행일	85. 2. 14
첨부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문 1부
수신처	서구 1-17.
2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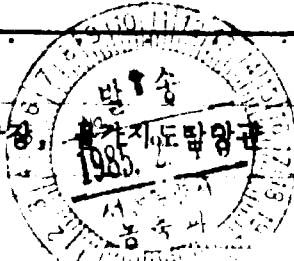


관인생략

(제 5 안)

수신 보건사회국장(보건위생과장), 상공과장,

제목 감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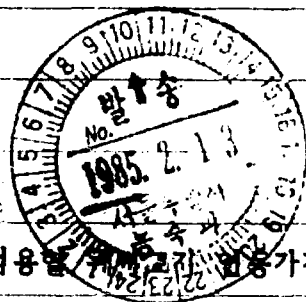
1.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규정(농수산부 훈령 제56 1호 83.9.19)에 의하여 당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별첨과 같이 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문 1부.

(제 6안) 시행안 98

수신 공보관

제목 감은건



발신 산업경제국장

1. 당시 관내에 적용할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별첨과 같이 조정 고시  
하였기 통보하오니 이를 시보에 게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돼지고기연동가격 고시문 1부. 끝.



산림경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법무장시	85. 2. 11	제 5호
담양지	농수산부	농수산부
한	전결	추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561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 2. .

서울특별시장 양보현

1. 돼지고기 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500그램당) 1,800 원

2. 시행일

1985. 2. 14 부터

第46次 生肉 1kg 連動價格調整

1. 現況

1. 現行連動價格

調整日序	連動價格	枝肉競落價格	備 考
85. 1. 16	2000 元	2695 元	

2. 供給動向

区 介	10月	11月	12月	1月	2月
'83	3878	3559	4448	844161	4121
'84	4072	4489	4510	843732	3860
増減	154	970	62	△ 1029	△ 261
%	107.2	126.2	101.2	△ 21.6	△ 6.3

3. 枝肉競落價格動向

区 介	10月	11月	12月	1月	2月
'83	1797	1644	1525	841622	1525
'84	1849	2028	2335	842632	2374
増減	52	384	810	1010	849
%	102.8	123.3	153.2	162.2	155.2

4. 枝肉 kg 為價格

1997.1.16

2. 調整以後價格動向

期 間	供給頭數	競落價格	騰落率	競力價格 元	備 考
85.1.14~1.18	4569	2691	0%	2000	
1.19~1.15	4644	2722	10.0	2000	
1.16~1.20	4429	2797	107.6	2050	
1.21~1.25	5135	2690	△ 2.2	2000	
1.26~1.31	3741	2411	△ 10.6	1800	
2.1~2.5	3769	2400	△ 10.9	1800	

2. 調整事由

都売市場 競落價格  $\Delta 10.9\%$  減少

競力價格調整 - 競力價格安定

3. 競力價格調整

現 行			調 整		
施行日	競落價格	競力價格	施行日	競落價格	競力價格
85.1.16	2691	2000	85.2.14	2400	1800